

문서번호 마케팅본부 23-00452 호 (오기석, 769 - 3229)
 발 신 2023.09.08.
 수 신 수신처참조
 참 조 수시공시담당부서장
 제 목 수시공시 대상 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안내

04538 서울특별시 중구
 삼일대로 343 19층
 (저층1가, 대신파이낸스센터)

343, Samil-daero, Jung-gu,
 Seoul 04538, Korea

asset.daishin.com

1.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2.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 89 조 및 시행령 제 93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당사 소규모펀드 현황을 안내하오니 수시공시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대상펀드 :

펀드명(운용펀드)	펀드명(투자자펀드)	발생일자	수시공시 내용
대신 대표기업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	대신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[주식]Class C	2023-09-07	소규모펀드 (1개월) 여 부 공시
	대신 대표기업 어린이적립 증권 자투자신탁[주식] Class A, C1, C2		
	대신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[주식혼합] Class C		
	대신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제 2 호 [주식혼합]		
	대신 대표기업 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[주식혼합] Class C, C-e		
	대신 마이홈 장기주택마련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[채권혼 합]		
	대신 퇴직연금 40 대표기업 증권 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Class C, C-e		
	대신 퇴직연금 60 대표기업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		

2. 수시공시 사유: 상기의 집합투자기구는 최초 설정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설정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첨 부 : 소규모펀드(1개월) 현황 1부. 끝.

대신자산운용(주)

대표이사 진 승 욱



수신처: 기업은행, 교보생명, 대신증권,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신한은행, 신한투자증권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케이프투자증권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하이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양증권, 한국포스증권, 현대차증권, 흥국증권, BNK 투자증권, IBK 투자증권, KB 증권, NH 투자증권